



Q & A

2016. 9

목 차

< 채무조정 개선방안 관련 >

- 1.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면제제도가 악용될 소지 내지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은 없는지? 1
- 2. 미소금융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성실상환자를 기존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은 없는지? 2
- 3. 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로 다시“빛의 굴레”에 빠지는 사례가 많아질 가능성은 없는지? 3
- 4. 신용정보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은? 4
- 5. 발견재산의 매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? 5
- 6. 주채무자의 완제의 효력을 보증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채권자 권리제한이 아닌지? 6

<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관련 >

- 7.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취지는? 7
- 8.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? 8
- 9.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있을지? 9
- 10.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 및 매각 금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닌지? 10
- 11. 추심 위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이유는? 11
- 12.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 도입의 기대효과는? 12
- 13.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? 13

1.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면제제도가 악용될 소지 내지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은 없는지?

- 성실상환자에 대한 잔여채무 변제는 채무상환 중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한하여,
 -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내 각각 설치된 '채무조정위원회'의 심의를 거쳐 확정
 - * (행복기금) 채무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면제여부 확정
 - (신복위) 채무조정위원회 심의 후 금융기관의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
- 채무자가 잔여채무 면책을 신청하더라도 사안별 적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거쳐 확정되므로, 동 제도가 악용되거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은 적음
 - 또한, 우선 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신청 추이를 보아가며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

2. 미소금융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성실상환자를 기존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은 없는지?

- 미소금융의 창업·운영자금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영업과 관련된 컨설팅 수행여부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
- 채무조정 성실상환의 기준을 낮춰 대상자를 확대해도 창업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,
 - 자영업관련 컨설팅 등을 유료하고 사업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므로 도덕적 해이로 연결될 소지는 적음
 - * 현재까지 미소금융 대출상품을 이용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는 약 276명
- 또한, 신복위·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대출의 경우, 9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자격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였음

3. 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로 다시 “빛의 굴레” 에 빠지는 사례가 많아질 가능성은 없는지?

- 소액신용카드의 지원대상은 채무조정 약정금액을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로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여 운영 중
 - 또한, 금번 한도 확대 대상자는 소득증빙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연체가능성이 적은 대상으로 하며, 상환기간이나 연체이력 등을 고려
- 참고로, 약 1년간 소액신용카드 제도 운영결과 당초 우려와 달리 일반인과 연체율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,
 - 사용처도 음식점, 주유소, 마트 등 실생활 위주로 사용하고 있어 낮은 한도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

4.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은? [국민행복기금]

- 신용정보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기본수수료, 성과수수료, 약정수수료가 있으며, 매월 이를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음
 - * 추심에서 신용회복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회수실적에 따른 단일 수수료 체계에서 기본수수료+성과수수료+약정수수료로 개선('14.2월)
- 기본수수료는 채권추심인의 최소수입 지원을 통한 근무여건 조성 및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입찰시 제시한 요율 지급
- 성과수수료는 채권회수 실적(회수금)에 대해 목표 달성률, 연체율 등에 따라 지급
- 약정수수료는 약정체결을 통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신규 약정 건수에 대해 목표 달성률에 따라 지급
- 수수료 이외에 매 6개월마다 민원 발생 유무, 불법·과잉추심 적발 건수 등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반영하고 있음

5. 발견재산 매각 가능성 및 생계형 재산여부 등을 고려할 때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?

- 발견재산의 은닉 여부, 매각가능성 및 생계형 여부 등은 채무조정위원회에서 개별 재산별로 심의·판단할 사안이나,
 - 재산이 토지인 경우, 매각이 곤란한 공동명의 중증재산으로 분묘가 다수 설치되어 매각이 어려운 경우가 해당될 수 있으며,
 - 재산이 자동차인 경우, 장애인 본인이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형자동차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6. 주채무자가 약정금액의 상환을 완료한 경우, 완제의 효력을 보증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채권자 권리제한이 아닌지?

- 주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주채무자가 약정금액을 완제하였다면,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함
 - 주채무자의 완제의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, 보증인이 구상권* 청구를 하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무력화될 가능성
- * 주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 금액만큼 보증인이 상환한 경우, 상환금액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

7.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마련한 취지는?

- 그 동안 정부는 채권추심법 제정('09년), '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'(15.4월) 마련, 대부업법 개정*(16.7월 시행) 등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

* 금융채권의 매각기관 제한, 매입추심 대부업자의 등록요건 신설 등

- 그럼에도 불구하고, 채권 추심 관련 금융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되고, 그간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에 대한 관리·감독이 다소 미흡했던 측면

- 이에 따라, 전체 금융시장의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을 정착 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

8.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?

-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법, 신용정보법 등에서 규율하는 채권 추심 관련 준수사항을 추심업무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더욱 강화

- 이번에 보완·시행될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
① 허가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에는 추심 위임 금지

② 추심 전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 의무

* 채무자가 채권의 정확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경우, 입증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추심 중단

③ 추심 착수 3영업일 전까지 추심절차, 불법추심 대응 요령,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 송부 의무

④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·매각 행위 금지

⑤ 소액채무자(150만원 이하) 등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제한

⑥ 채무 독촉 횟수 1일 2회 이내로 제한

9.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있을지?

- 기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'14년말 행정지도 정비에 따라 폐지되었으나,
 -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기존 가이드라인을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준수·운영해왔음
- 채무자 보호 측면이 더욱 보강된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식 행정지도로 등록·시행하여 적극적 준수를 유도할 예정
 - 특히, 신규로 가이드라인을 적용받게 되는 대부업권*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
 - * 금융위 등록대상이 아닌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조요청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유도할 예정
- 한편, 우선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전한 추심 관행을 조속히 정착시키되,
 - 향후 주요사항은 관련법령에 반영토록 할 예정

10.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 및 매각 금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닌지?

- 지난 '15.12월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·매각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며,
 - 이번 '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'에 위 행정지도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부업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임
- 한편, 현재 법무부에서도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채권추심법 개정에 대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

11. 추심 위탁자 책임을 강화하는 이유는?

- 현재 불법 추심행위를 한 채권추심인, 무허가 추심업자 등은 신용정보법, 채권추심법 등 위반으로 제재가 가능하나,
 - 추심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(채권자)·추심회사(위탁자)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적극적 제재가 어려움
- 이에 대해, '17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,
 -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위임 금지를 명문화하여, 위반시 처벌근거를 신설하고,
 -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·감독책임을 부여하여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

12.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 도입의 기대효과는?

- 그간 본인 채무에 대한 금융회사의 과거 채권 양수도 내역 조회가 불가능*하여,
 - * 민법(§450)에 따라 채권자는 채권 매각시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, 채무자가 기록·관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 변동내역 확인이 곤란
 - 채무자가 본인 채무의 채권자 변경내역·일자 등의 파악이 어렵고, 불법적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에 한계
-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 구축시, 채무자가 본인 채무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, 정확한 채무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,
 - 권원이 불분명한 추심행위, 이미 변제한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, 부정확한 금액의 변제 요구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임
 - 이를 통해, 채무자의 권리보장이 강화되고, 불법 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13.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?

-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 매각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시하여, 매각 과정에서 원 채권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*할 계획임

* 채권매각 이후 반복적 재매각 등으로 불법·부당 추심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, 원 채권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은 부재했던 측면

- 예를 들어,

- 부실채권 매각시, 매입기관에 대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, 불법 추심관련 과거 기록 등에 대해 적절한 실사 (Due Diligence)를 실시하도록 하거나,
- 빈번한 재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 후 일정기간(예: 6개월) 재매각 금지를 계약조건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음

- 이러한 제도 개선은 무분별한 채권자 변경에 따른 민원 발생을 줄이고 평판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,

- 원 채권 금융회사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으로 기대